

• 새로운 연수 • 튼튼한 연수 • 따뜻한 연수



# 연수구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선	기 관 의 장
람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록 제831호 2014. 10. 31.(금)

###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014-258호(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0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06호(인천광역시연수구동(洞)복지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 13

###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84호(도로명 주소 고시) ..... 23
-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85호(도로명 주소 고시) ..... 24

회							
람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과 관련하여 의무적 고발대상의 기준금액을 낮추고,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도 의무적 고발대상에 추가하는 등 부패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공무원의 보고 의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li> <li>○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최소한 200만원 이상의 금품 관련 부패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안 제5조제2항)</li> <li>○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li> <li>○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도록 함(안 제6조)</li> </ul>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4. 10. 31.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58 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각 부서장 및 기관의 장과 감사담당자는” 을 “소속 공무원은” 으로 한다.

제5조의 본문 및 후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경우.” 를 “경우” 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6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발 여부의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의 판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와 시행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과의 <u>각 부서장 및 기관의 장과 감사담당자는</u>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업무부서의 장(이하 “감사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구청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p> <p>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u>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u></p> <p>가. 금품수수 관련</p>	<p>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 ----- -----<u>소속</u> 공무원은 ----- ----- ----- -----</p> <p>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 ----- ----- ----- ----- ----- ----- -----.</p> <p>1. ----- ----- ----- ----- <u>경우 &lt;단서 삭제&gt;</u></p>

유 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 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나.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  
횡령, 3천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  
용한 경우

다.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  
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  
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 7. (생략)

<신설>

2.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범  
죄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  
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  
수, 공금 횡령·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  
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  
·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 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구청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  
----- . <후단 삭제>

<삭 제>

② -----  
-----  
-----  
-----  
----- .

## 입 법 예 고 공 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도모하고 평상시에는 재난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개정 주요내용

######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화(안 제6조)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년11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조 : 안전관리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749-8851, FAX 032-749-8849, [www.yeonsu.go.kr](http://www.yeonsu.go.kr)】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사항
-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u></li> <li><u>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u></li> <li><u>3.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u></li> <li><u>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u></li> <li><u>5.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u></li> <li><u>6.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u></li> <li><u>7.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u></li> <li><u>8.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u></li> <li><u>9.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u></li> <li><u>10.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u></li> <li><u>1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u></li> <li><u>1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u></li> <li><u>1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u></li> <li><u>14. 재난 관련 장비 구입</u></li> </ol>	<p>제6조(기금의 용도)  <u>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1과 같다.</u></p>

[별표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안 (제6조 관련)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등 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 나.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 장비나 물자의 구입, 임차
-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 라.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 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업
- 사. 기금관리 업무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방재시설 : 보수·보강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 「도로법」 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 : 설치·보수·보강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각 목의 용도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다. 생활안전장비 구입

5.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각목의 용도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인천광역시연수구동(洞)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1. 제정이유

-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동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3조(기능)동 복지지원회의 기능
  1.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2.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에 대한 선도 및 상담
  3. 사회복지대상자와 후원자(개인, 단체, 사업체 및 행정기관)와의 복지연계 지원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신고 및 지원
5.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 보호
6.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네트워크구성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제4조(구성)동 복지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을 9명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동 복지위원의 자격기준 명시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3. 초·중·고교 교사 또는 대학교수
4.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종교 시설의 대표자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제10조(회의수당) 및 제11조(교육 등)

동 복지위원 회의참석시 수당지급을 명문화하고 교육 및 간담회등 행사지원시 예산반영이 가능하도록 명시

### 3.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최근 복지사각지대문제해소를 위해 「대통령 수석 비서관회의」 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확충시스템 마련” 을 지시함.
- 이에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확충시스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코자 “동 복지위원회” 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2015년 예산 반영 및 조속한 사업 추진 등 입법이 긴급을 요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 5(수)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복지정책과(☎749~7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 115 (동춘동)
- 연 락 처 : 전화 749-7632, FAX 749-762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관련법령

【붙임 1】 제정조례(안) 전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소득주민·노인·아동·장애인·한부모가정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 라 한다)의 발굴과 선도, 상담,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동(洞)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한다.

1.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2.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에 대한 선도 및 상담
3. 사회복지대상자와 후원자(개인, 단체, 사업체 및 행정기관)와의 복지연계 지원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신고 및 지원
5.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 보호
6.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3. 초·중·고교 교사 또는 대학교수
4.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종교시설의 대표자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의 요청에 의해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신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장이 복지업무 협조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수당) 각 동(洞)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복지위원에게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교육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회복지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관련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 제8조(복지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조(복지위원)

①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2008.11.5, 2012.8.3]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시행일 2009.12.1]]

④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8.11.5]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검토의견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03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 9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14-6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 91	신축	2009-12-09	청학동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푸른숲속의 마을이라는 뜻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749-7594 ~ 75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1. 0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31.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 74 외 1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칭학동 14-4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 74	2014.10.31	건축물 멸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23-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90번길 61-7	2014.10.31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민원지적과(☎749-7594~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